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정의 개선 〉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30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유산수리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정의 개선(안 제2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운영석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6. 12.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반드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 규정과 실제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 정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 해당 자격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Ⅲ. 검토의견

1. 국가유산수리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정의 개선(안 제2조)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의3. (생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u>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u> 을 말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 ----- ----- -----.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u>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u> 을 말한다.	3. -----제11조제2항에 따른----- ----- ----- ----- -----.
4. ~ 17. (생략)	4. ~ 17.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¹⁾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2조 제3호²⁾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유산수리법」 제5조 제1항³⁾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제4항⁴⁾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유산수리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국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법」 제5조제4항의 예외규정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으며, 현행 정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현행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현행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정의 규정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간의 지도·감독 관계를 명시한 문구를 삭제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참여하지 않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는 경우, 작업에 대한 지도·감독의 주체와 책임이 불명확해지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업무상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함께 수리현장의 지휘·감독 체계 및 책임관계가 명확히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서로 지도·감독을 하고 받는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현행법이 수리 참여자를 수직적 관계로 규정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 등에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 참여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조치이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세부 종류별 업무 범위로 정할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수리 현장을 지도·감독하는 기본적인 역할 체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부분으로, 이를 고려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및 국가유산수리업 등 현황

[2025. 12. 31. 기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6개 직종)

(단위 : 개)

종 별	보 수	단 청	실 측 설 계	조 경	보 존 과 학	식 물 보 호	계
개	847	595	122	296	182	198	2,240
자격취소	50	33	18	2	1	0	104
총계	797	562	104	294	181	198	2,136

□ 국가유산수리기능자(20개 직종)

(단위 : 개)

종 별	한 식 목 공	한 식 석 공	화 공	드 잡 이 공	번 화 와 공	제 작 와 공	한 식 미 장 공	철 물 공	조 각 공	칠 공	도 금 공	표 구 공	조 경 공	세 척 공	보 존 과 학 공	식 물 보 호 공	실 측 설 계 사 보	박 제 및 표 본 제 작 공	모 사 공	온 돌 공	계
개	2,086	1,492	1,121	520	878	65	756	105	400	1,037	249	263	1,038	551	1,568	453	854	61	302	256	14,055
자격 취소	179	118	74	77	122	2	102	0	18	12	9	8	40	4	6	3	4	1	0	0	779
총 개수	1,907	1,374	1,047	443	756	63	654	105	382	1,025	240	255	998	547	1,562	450	850	60	302	256	13,276

* 국가무형유산보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28개)

□ 국가유산수리업 등 (12개 업종) : 685개 업체

(단위 : 업체수)

업 종 별	종합 국가유산 수리업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국 가 유 산 실 측 설 계 업	국 가 유 산 감 리 업	계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선공사업	번화공사업	미장공사업	온돌공사업			
업자수	273	87	72	84	5	2	6	1	1	0	81	73	685